

이 자료는 2005.12.9(금요일) 09: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參 考 資 料	생 산 일	2005년 12월 9일
		생산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최원목(2110-2301)
		담 당 자	강부성(2110-2302)

題 目 : '05.1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2.9일(금) 09:3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범위조정' 방안 및 고용·해운·항만물류·유통 등 3개 분야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

※ '중소기업 범위조정' 방안은 12.9일 회의종료후 중소기업청에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할 예정(브리핑 장소 : 재경부 브리핑룸)

※ '해운항만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은 해양수산부에서 기재포한 보도자료 참조(별첨 브리핑자료)

【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

☐ 추진배경

-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하여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인재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고용서비스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

☐ 세부 추진내용

<규제개혁과 지원강화>

- 현행 직업소개 요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구인자 부담을 전제로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으로 변경하되 구직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06 상반기중)
- 방송광고 금지업종인 직업소개사업 중 우수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건전광고 허용 추진
-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개업노무사도 포함하고 개인인 직업소개 사업자도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 신고절차 및 겸업금지 등 규제를 개선

-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Job-Net)을 '06.8월까지 구축
- 중앙고용정보원 등을 통하여 우수기관으로 평가·인증된 직업소개업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파트너십 발전>

- 취업지원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기구직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효율성 제고(06년, 38억원)
- 사업주의 전직지원장려금 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직지원 활성화(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채용박람회의 민관 공동개최를 활성화하고 중앙고용정보원을 통하여 민간기관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직업연구 자료, 적성검사·진로지도 매뉴얼 등 제공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불법 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직업안정법 개정, 법제처 심사중)
- 직업소개 업종별 협회 및 단체의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직업소개·직업상담에 대한 기본지식 및 직업윤리를 함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지자체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훈련기관 활성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방안】

□ 추진배경

- 민간직업훈련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과 직결된 수요자 위주,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체계 구축

□ 세부 추진내용

<훈련비용 지원방식 개선 및 현실화>

- 모든 훈련과정에 표준훈련비를 일률 적용하는 현행 훈련비 단가제도를 물가상승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06 고시안에 반영)

< 민간훈련 내실화를 위한 훈련체계 구축>

- 지자체·훈련기관 등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훈련계획 수립·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방노동청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실업자 직업 훈련 실시체계를 개선
- 1주 이상의 집체훈련과정 수료 요건 삭제 등 기업내 현장훈련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표준훈련비의 20%→40%)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및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차등화 등으로 훈련기관간 경쟁 강화 및 훈련생 선택권 확대

< 민간훈련기관 규제완화 등 육성지원>

- 현재 많은 지정 직업훈련시설이 적법한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훈련 차질이 우려되므로 직업훈련시설의 용도를 학원과 같이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훈련기관의 훈련용 건설기계 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의 가입 예외 인정 추진
- 훈련시장에 대한 진입·퇴출이 쉽도록 훈련법인을 해산하고 영리 법인화 하거나 개인훈련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

-중소유통업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중심으로-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05.4.1~10.31)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산업의 향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대형·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

□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이론중심에서 현장중심의 창의성 있는 교육연수 지원 및 성공사례(Best practice) 적극 발굴·전파

- 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에게 경영전략·회계 등 컨설팅 지원
- 자영업 컨설팅사업 내실화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자금을 연계한 「5단계* 창업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①컨설팅 → ②교육 → ③현장실습 → ④자금관리 → ⑤사후관리
- 중소기업·재래시장이 공동구매·배송·판매하는 공동물류 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물류비 절감도모

②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 포상 확대 및 인증 부여방안 검토
- 지역특산물에 프랜차이즈 마케팅기법을 접목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한 판로 확대 및 지역산업으로 육성

③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납품업체간 상생협력

- 대형·중소유통업체 및 지자체 관계자간 유통업 상생 협의회를 구축하여 상호협력을 유도
- 대형유통업체의 전문지식을 중소기업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납품업체의 상생발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유통대상 등 포상 추진
- 대·중소유통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

* 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05.4.1 시행)

【 참고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05.12.9(금) 09:30~,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
- 참석 : 총 17명
 - 경제부총리(주재), 농림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 장관, 과학기술부·법무부·산자부·정통부·복지부·환경부·건교부·해수부 차관, 국정홍보처 차장,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 별첨 :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노동부)

민간훈련기관 활성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촉진 방안(노동부)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산자부)

해운항만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해수부)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회의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회의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라진 내용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財 政 經 濟 部

政 策 弘 報 管 理 室 長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고용서비스 경쟁력강화방안

-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

2005. 12. 9

노동부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추진 방안	5
1. 규제개혁과 지원강화	6
2.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파트너십 발전	10
3.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12

[참고] 과제별 추진 일정

I. 추진 배경

-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이 중요
 -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잠재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등의 중추적 기제인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국가적 과제
- 최근 선진국은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민간의 장점에 주목하고,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추세
-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용지원서비스의 역사가 일천하여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
- 이에 '05.4.6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동반 성장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후
 - 「민간인력서비스산업 육성대책 T/F」를 구성, 구체적인 민간 활성화 방안 논의
 - ※ 재경부 등 관계부처, 노사,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3차례 회의 개최('05.5.20, 6.2, 10.13)
- 그간의 T/F 논의내용, 민간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 인증제, 민관협력사업 지원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05.12월)

II. 현황 및 문제점

- 민간 고용서비스업은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인재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임

- ※ ILO 제181호 협약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협약(1997)” 참조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 사업서비스업(M)의 하나인 고용서비스업(751)에 해당

- ※ 고용서비스업은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으로 구성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05.6월 현재 총 8,054개소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수준으로, 직업소개소가 대부분을 차지

- ※ 직업소개 6,649개소, 직업정보제공 260개소, 근로자파견 1,103개소, 근로자공급 42개소

- ※ '04년도 유료직업소개소 1개소당 연 평균 매출액 57.3백만원 ('05.9월 416개 국내유료직업소개소 현황조사 결과)

-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업은 여전히 경제내 위상이 낮고 낙후되어 있는 바,

- 고용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부의 지원 체제가 미흡

- ※ 국가적으로 표준화, 통계구축 등 산업발전기반 인프라 미흡

- 또한, 업체 스스로도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 이로 인한 낮은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① 직업소개사업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규제완화('99.2월 직업안정법 개정), 취업난 등으로 '99년 이후 그 숫자가 급증

< 국내 직업소개소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98년	'00년	'02년	'04년	'05.6월
계	1,902	3,378	5,572	6,498	6,610
국내유료	1,773	3,168	5,169	6,096	6,209
국내무료	129	210	403	402	401

※ 국외직업소개소: 23개소('98년) → 25개소('00년) → 22개소('02년) → 27개소('04년) → 39개소('05.6월말)

- 유료 직업소개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건설일용직, 간병인, 파출부 등 임시·일용직 취업 알선이 90% 이상을 차지

※ '00년에서 '05.6월말 사이 국내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법인은 7.8% 증가 (463개소→499개소), 반면 개인은 111.1% 증가(2,705개소→5,710개소)

- 무료 직업소개소는 '00년 이전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민간직업소개소의 6%에 불과

※ 400여개소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공공부문과의 연계 미흡

- 외투기업,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고급인력을 알선하는 헤드 헌트 업체가 있으나 인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일용직이나 비공식 부문 일자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무등록 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과다 소개료 수수 등 민생침해사례 상존

② 직업정보제공사업

- '99년 이전에는 주간 취업정보지 등 인쇄매체가 주를 이루었으나 '00년 이후 인터넷 매체 이용 급속 확산

<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98년	'00년	'02년	'04년	'05.6월
계	47	104	264	251	260

- IT 발전, 청년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 증가로 기존 오프라인 직업소개기관에 비해 비교 우위
- 일부업체를 중심으로 채용박람회, 채용대행 등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으나
 - 대다수 직업정보제공사업체는 그 규모가 영세하여 취업 실적이나 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미

③ 근로자파견사업

- 파견업체수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1,357개소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05년 소폭 증가
 - 업체당 연간 평균 파견근로자수는 약 70명으로 영세한 수준

< 파견업체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98년	'00년	'02년	'04년	'05.6월
계	789	1,357	1,243	1,050	1,103

- 파견대상 업종도 일부에 한정되어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

Ⅲ. 추진 방안

비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목표

민간 고용서비스를 건전한 유망산업으로 육성



중
점
추
진
과
제

① 규제개혁과 지원강화

가. 규제의 질 개선

- 직업소개요금 제도개선
- 직업상담원 등 자격요건 개선
- 직업소개업 건전광고 허용
- 겸업금지 등 규제개선

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강화

- 구인정보허브시스템 구축
- 우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
- 직업소개사업체 D/B 구축
- 전문성 강화 지원

② 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실시
- 전직지원 활성화
-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운영
- 직업박람회 공동개최 등

③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고용안정센터, 지자체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제 실시
- 민관협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1. 규제개혁과 지원강화

- ◆ 경쟁제한적이고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
- ◆ 표준화 · 품질인증, 지원인프라 구축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가. 규제의 질 개선

□ 직업소개요금에 대한 제도개선

- 현재 유료 직업소개시장에 대하여는 소개요금 고시에 의한 가격상한제 적용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국외유료 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5-36호)

- 향후 시장에 의한 가격형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구직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06년 상반기)

※ ILO 제181호 협약(1997)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이 근로자에게 수수료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특정형태의 서비스 및 일정범주의 근로자에 한해 예외 인정

□ 직업소개사업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 개선

- 대표자 요건은 완화하여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하되, 직업상담원 요건은 강화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소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06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현 행	제도개선(안)
① 대표자 · 일정 자격, 경력, 학력요건 열거(8가지) ② 직업상담원 · 대표자와 유사하게 일정 자격, 경력, 학력요건 열거(9가지)	① 대표자 · 자격요건 완화 ② 직업상담원 · 직업상담 관련 자격 · 경력 위주로 강화



□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건전광고 허용

- 국민들의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를 높이고 투명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건전광고 허용 추진

※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의해 직업소개업은 방송광고 금지 업종에 해당 → 우수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 등에 대하여는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등 협의(방송위원회)

□ 신고절차 및 겸업금지 등에 대한 규제개선

- 직업소개사업자가 별도의 신고없이 인터넷 등을 활용, 직업 정보제공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완화**
-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업(業)으로서 모집한 경우에만 신고토록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의무 완화**
- 고용 및 노사관계 전문가가 직업소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개업노무사도 포함**

※ 현행 직업안정법령상 공인노무사 자격소지자는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제외

→ '99.2.8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개업노무사 겸직금지 의무가 삭제되어 이를 반영

※ '05.9월말 현재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자 수 : 1,733명

-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금지 대상에서 결혼상담 및 중매 행위를 하는 업 제외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된 사실 반영

- 개인인 직업소개사업자도 법인 사업자와 같이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이와 병행해 직업소개시장의 프랜차이즈화 활성화 방안 검토

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구인정보 허브시스템(Job-net) 구축

-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 모아 Work-net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 구축('05.12월~ '06.8월)

< 일본의 Job-Net >

1. 개 요

- 일본은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Job-net을 구축하여 운영('01)
 - ※ Job-net에서는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상세한 구인정보는 해당 민간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

2. 주요 서비스

- 일반이용자 : 구인정보 통합검색, 참가기관 정보검색 등
- 참가기관 : 구인정보 등 정보관리

3. 운영 상황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5천개소에서 보유한 구인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이용현황('05.4월 기준)
 - 구인정보건수 : 76만건(공공직업안정기관 61만건, 참가기관 15만건)
 - 1일 평균 조회건수 : 101만건

□ 우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 실시

-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업체 스스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 인증대상 기관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우선 실시 후 기타 고용서비스업으로 확대

- 중앙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포상,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

※ 민관협력사업(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안정센터 시설 이용, 정보망 연계, 지도단속 완화 등

< 우수기관 인증절차 (예시) >

구 분	세 부 내 용
1단계	· 평가인증 신청 및 선정 · 평가인증 제도 설명회(평가인증 지침, 자체점검보고서 등 소개) · 관련서류 교부
2단계	·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3단계	·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서류심사 · 구인·구직·취업 DB 및 지도단속결과 자료 분석 · 현장 평가자 훈련 및 현장평가 실시
4단계	· 인증운영위원회 최종심의 및 결정 · 인증결과 통보
5단계	· 사후 현장점검 · 교육 등 인센티브 부여 · 구인·구직·취업 D/B 및 지도단속결과 자료 모니터링

□ 직업소개사업체에 대한 D/B 구축

- 각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전국 직업소개소의 구인·구직·취업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D/B화

-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등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운영하는 지역산업행정정보시스템에 D/B 구축
→ 동 D/B를 중앙고용정보원 전산망과 연계 추진('06년 상반기)

□ 민간 종사자 전문성 강화 지원

- 민간기관이 정확한 직업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문성 강화 지원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보급(중고원)

2.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파트너십 발전

- ◆ 민간 사업자의 우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
- ◆ 공공부문과 민간 취업알선기관간 파트너십 강화

□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실시

- 취업지원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효율성 제고('06년, 38억)

※ 취업지원 대상 : 장애인, 장기구직자 등 취업애로계층

※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된 기관에 업무 위탁, 대도시 위주로 시범실시

< 외 국 사 례 >

- 호 주 : '98년부터 공공고용서비스기관(Centrelink)의 취업알선 업무를 Job Network라 불리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공개 경쟁을 통해 위탁
- 영 국 : '00년부터 실업률이 높은 13개 낙후지역을 Employment Zone으로 설정하고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취업알선 업무를 민간위탁
- 네덜란드 : '02년부터 취업애로집단에 대한 취업알선을 민간위탁
- 일 본 : '04년 5개도시에서 1년이상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업무 민간위탁 시범실시

□ 전직지원(Out-placement) 활성화

- 경력자 위주의 채용 패턴, 빈번한 직장이동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전직지원 서비스의 중요성 증가

※ 경력자 채용비중(고용보험 DB) : 39.6%('96)→77.0%('00)→79.0%('04)

※ '04년도 전직·자영업 목적 이직자는 689천명, 전직지원장려금 수급자는 0.4%(2.7천명)에 불과

- 사업주의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활용도를 높여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금 수준 인상,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지원금 수준 인상 : 전직지원서비스 소요비용의 3분의2(대규모 기업은 2분의1) 지원→ 4분의3(대규모 기업은 3분의2) 지원

※ 지원요건 완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요건 삭제

□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지원

- 노사가 공동으로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설립('05.11.28)
- 경총과 노총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실직 근로자 등에게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 사업 강화

- 직업(채용)박람회를 지자체, 대학,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공동 개최(고용안정센터)
- 민간기관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직업연구 자료, 적성검사·진로지도 매뉴얼 등 제공(중고원)

3.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사후단속 강화와 더불어 사전에 불법 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직업소개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등 서비스 업종별 협회 및 단체를 통한 자율점검 및 교육훈련 등 강화

⇒ 업계 스스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토록 지원

- 직업소개·직업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직업윤리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지자체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제 실시 등

- 불법 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로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 도모('05.12월, 직업안정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직업안정법상 신고포상 대상행위 : ①제34조(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②제46조제1항제1호(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 ③제46조제1항제2호(성매매 또는 음란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직업소개 등을 한 자)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를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제 신설('06년 1/4분기,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 민관협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온라인/오프라인상 불법 구인정보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창구 운영(중고원, 고용안정센터 등)
-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파트너가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지자체, 고용안정센터)

【참 고】

과 제 별 추 진 일 정

과 제 명	추 진 일 정	소관부처
① 고용서비스를 유망산업으로 육성		
①-1. 규제외 질 개선		
①-1-1. 소개요금 및 자격요건 개선	제도개선방안 마련('06년 상반기)	노동부
①-1-2. 직업소개업 건전광고 허용	심의규정 개정 협의	방송위
①-1-3. 신고절차 및 검업금지 등에 대한 규제개선	직업안정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05.12월), 동법 시행령 개정('06.1/4분기)	노동부
①-2.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강화		
①-2-1. 구인정보허브시스템 구축	사업기간('05.12월 ~ '06.8월)	중고원
①-2-2.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고용지원서비스 모니터링 센터 개소('06.상반기) 및 인증 실시('06.하반기)	중고원
①-2-3. 직업소개사업체 D/B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완료('06.3월)	자치정보화조합
①-2-4. 사이버 교육 시스템 개발	개발완료('06.하반기)	중고원
②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②-1.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실시	사업실시('06.1/4분기)	노동부
②-2. 전직지원 활성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05.12월)	노동부
②-3.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지원	센터 개소('05.11월)	노동부
②-4. 민관협력사업 강화(채용박람회 등)	지속추진	노동부 중고원
③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③-1. 업종별 협회 등에 의한 자율규제 강화 센터·지자체 합동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및 운영('06.1/4분기)	노동부 지자체 등
③-2.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제 실시	예산반영 추진('06년도)	노동부 지자체
③-3.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 게재 금지	직안법 시행령 개정('06.1/4분기)	노동부
③-4. 민관협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계획수립 및 운영('06.1/4분기)	노동부 지자체 등

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 민간훈련기관 활성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촉진 방안-

2005. 12. 9

노 동 부

- 목 차 -

I. 배경 및 추진경위	1
II. 추진 방향	2
III. 세부 추진 방안	3
1. 훈련비용 지원방식 개선 및 현실화	3
2. 민간훈련 내실화를 위한 훈련체계 구축	4
3. 민간훈련기관 규제완화 등 육성지원	7

[참고] 과제별 추진 일정

I. 배경 및 추진경위

- **직업훈련**은 그간 경제성장, IMF 대량실업 극복, 지식정보 사회 진입과정을 거치면서 그 역할, 범위가 크게 확대
 - 그러나, 양적증대에 비해 민간 직업훈련시장 활성화와 훈련 기관간 경쟁촉진을 통한 질 제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현행**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훈련비** 위주로 되어 있고, **훈련비** 단가도 비현실적이어서 기업의 다양한 훈련투자 확대 및 훈련 내실화 촉진에 미흡
 - 또한, 훈련과정 인정요건 및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과 괴리된 직무중심의 훈련으로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 개설이 어려움
 - 따라서 **민간직업훈련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육성하는 한편,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직업훈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훈련체계 구축 필요
 - 이에 '05.4.6 대통령께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보고하고 '05.5.19 세부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05.11.29 최종 혁신방안 마련
- ※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 15차례 회의 개최(팀장 :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II. 추진방향

목 표

훈련기관·기업의 훈련기반 확충을 통한
근로자·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촉진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

훈련비용
지원방식 개선
및 현실화

- 표준훈련비 단가체계 개편 및
단가 인상

민간훈련
내실화를 위한
훈련체계 구축

- 실업자 직업훈련의 자율성 부여
- 기업내 현장훈련 활성화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민간훈련기관
규제완화 등
육성지원

- 민간훈련기관 시설·기준 등 규제완화
- 훈련법인의 영리법인 또는 개인
훈련 시설로 전환 지원

Ⅲ. 세부 추진 방안

1. 훈련비용 지원방식 개선 및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직업훈련비는 표준훈련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이는 '99년 직업훈련의무제(훈련비 사후정산)를 폐지하고 자율훈련 실시체제로 전환하면서 지급기준을 전환한데 기인
 - 훈련비 단가는 동 제도 도입 이후 2차례 부분적으로 인상한 바 있으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비용보다 낮은 수준
 - ※ '02.1월 단기과정(120시간 미만) 13.8% 인상, '04.1월 120시간 이상 과정 5.5% 인상
- 모든 훈련과정에 표준훈련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이나 훈련기관은 훈련비 단가에 맞추어 훈련을 실시
 - 훈련의 내실화 저해 및 기업의 다양한 투자 제약 요인

□ 개선방안

- 훈련비 단가체계의 합리적인 산정방식 마련
 - 훈련의 내실화, 훈련비 단가의 적정성 및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05.2~11월)
 - 동 결과를 토대로 '06년도 고시(안)을 마련('05.12월)
 - ※ 단가는 물가인상률 및 '06년도 예산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 훈련비 단가체계의 장기적·종합적 개선
 - 매년 물가·임금 등 훈련비 소요 제비용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공표하는 방안 강구('06년)
 - ※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등 공표제도를 참고

2. 민간훈련 내실화를 위한 훈련체계 구축

가. 실업자 직업훈련의 자율성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체계는 노동부 본부에서 예산배정과 함께 기본계획 및 지침을 수립, 지방노동관서에 일괄 시달하여 집행함으로써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훈련 미흡
 - 지방관서는 지역별·직종별 훈련수요조사 없이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훈련과정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승인
- 훈련과정은 연2회(상·하반기) 승인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훈련 개시, 예산집행 등은 상반기에 집중
 - ※ 훈련개시 집중기간이 상반기는 3월~4월, 하반기는 6월~7월로써 연간 총 훈련과정의 약 70% 정도가 6월말 이전에 개설·운영
 -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훈련 희망자가 훈련을 받지 못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곤란하고, 훈련 미실시에 따른 훈련기관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

□ 개선방안

- 지방노동청의 자율·재량권을 확대
 - 지자체·훈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하고
 - 훈련과정도 연중 수시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
 - ※ 본부는 예산 배정 및 사업평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
 - ※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예규)』 개정 추진('05.12월)

나. 기업내 현장훈련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내 현장훈련의 경우 재직근로자, 공업계고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채용예정자에 한해 집체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만 현장훈련으로 인정
- 1주 이상의 집체훈련 요건과 함께 표준훈련비의 20%만 지급하여 부담으로 작용

<현장훈련 실시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도	훈련실시 사업장수	훈련인원	수료인원	지원액
'04	314	1,333	1,271	210
'05.8	92	824	723	55

□ 개선방안

- 현장훈련 지원요건 개선, 지원수준 현실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원수준 상향(20% → 40%) 조정 및 훈련수당 및 기숙사비 지원 신설('05.7.1 시행)
 - 1주 이상의 집체훈련과정 수료요건 삭제 및 현장훈련 지원대상에 일반구직자 포함 추진
 - ※ 「현장훈련 실시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05.2~7월)
 - ※ 직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및 직능개발훈련실시상황 보고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05.12월)

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평가기준이 취업률, 훈련생 만족도 등 훈련실적과 연계된 질적 평가요소 비중이 적고, 훈련생 관리 등 평가위원의 주관개입 소지가 많은 현장방문 평가 위주로 되어 있고,
 -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훈련기관의 불만 제기
-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 평가와 훈련의 내실화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우대가 부족
-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훈련생의 훈련기관 선택권 및 훈련기관간의 경쟁 미흡
 - ※ 공개범위 : 훈련기관별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HRD-Net)

□ 개선방안

- 평가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훈련실적 비중을 강화하고 평가기준 항목을 단순화
 - 평가위원의 연수기간 확대(1박2일→2박3일) 등 전문성 강화
- 평가결과와 훈련내실화 연계 강화
 - 우수훈련 기관 및 과정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강화
 - ※ 우수기관 수 단계적 확대('05년 10개소), 훈련과정 선정 심사시 우대 및 중소기업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강구('06년 상반기)
 - ※ 우수과정 수 단계적 확대('05년 30개), 인센티브 강화(훈련비 20% 추가지원→훈련비 30%까지 단계적 확대)
-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및 훈련기관간의 경쟁 강화
 - ※ 훈련기관별 취업률, 중도탈락률 등까지 공개 확대

3. 민간훈련기관 규제완화 등 육성지원

가. 민간훈련기관 시설기준 등 규제 완화

(1) 지정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시행('05.7.1)에 따라 '06.6.30까지 모든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적법한 건축물용도에 맞는 시설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지정받도록 하고 있으나,
 - 현행 많은 훈련시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탈락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훈련 차질이 우려됨
 - ※ 지정직업훈련시설 572개소 중 246개소(43%)가 건축용도에 맞지 않고, 이중 근린생활시설(174개소)은 92%(160개소)가 용도 부적정
 - ※ 학원은 연면적에 따라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
-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상가)에서 운영되는 직업훈련시설이 새로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
 -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이 초래되고, 임차건물의 경우 소유주가 용도변경 거부시 사업 포기가 불가피

□ 개선방안

- 직업훈련시설의 용도를 학원과 같이 시설면적에 따라 합리적 조정 필요(건교부 및 행자부 협의 필요)
- 학원과 같이 직업훈련시설도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06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및 소방법시행령 개정 검토

(2) 직업훈련용 건설기계장비의 정기검사 및 보험료 등 부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계정비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비실습용 건설기계는 일반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정기검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기본법)
- 훈련생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어(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 이중부담 등 과도한 훈련비용 발생
- ※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등을 면제

□ 개선방안

- 훈련기관의 훈련용 건설기계 장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관리법상 폐기장비와 같이 취급하여 정기검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의 가입 예외를 인정(건교부 협의 필요)
-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추진 검토('06년)

(3) 민간훈련기관 시설·장비 대부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기술변화에 부응하여 민간 훈련기관의 훈련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확대가 관건이나
 - 현행 대부제도는 조건·절차가 까다로운데 비해 이자율(4%)은 시중금리와 비슷하여 활용을 기피
 - ※ 대부절차가 4단계로 구성되고, 원금상환기간은 10년이나 사용확인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설정
 - ※ 연도별 민간훈련기관 대부 실적 : '03년, 3개소 16억원 → '04년, 1개소 2.5억원 → '05.8월, 6개소 70억원

□ 개선방안

- 대부 요건 및 절차 완화, 이자율 하향조정 등 제도개선 추진
 - 대부금 사용 확인기간 단축 : 부지 30년→15년, 건물 20년→10년
 - 이자율(4%)을 대규모기업 수준(25%)으로 하향 조정 검토(재정부 협의)
 - 대부절차를 4단계 → 1단계(공단본부 일괄 처리)로 축소
 - ※ 현행 대부 절차 : 인력공단지사 접수→공단본부 확정→은행과 훈련기관 대부 약정→노동부 결과 통보 및 자금배정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3조의2) 개정 추진('05.12월)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규정(고시) 개정('06.상반기)

나. 훈련법인의 영리법인 또는 개인훈련시설로 전환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훈련시장의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학원 및 개인훈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는 등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
- 그러나, 훈련법인은 설립·해산 및 각종 관리·운영상 규제로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치 못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 법인 해산시 출연재산의 엄격한 처분제한으로 인해 훈련시장에서 퇴출도 어려워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

※ 훈련법인 현황

- 성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목적 : 국가 기간직종의 인력양성 및 취약계층 직업훈련
- '05.10.7 조사결과 60개소 중 47개소(78%)가 영리법인 또는 개인훈련시설로 전환을 희망(계속 존속 희망은 10%에 불과)

□ 개선방안

- 훈련시설에 대한 재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을 해산하고 영리법인 또는 개인훈련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재경부 및 법제처 협의 필요)

※ '05.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훈련법인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개인 환원 등 특례규정(1년간 한시적) 마련('06년 상반기)
- 법인 해산시 한시적으로 당해법인의 증여세 특례규정 마련 검토 등

【참 고】

과 제 별 추 진 일 정

과 제 명	주관 부서	협조부서	'05	'06	'07 이후
1. 훈련비용 지원체계 개선					
1-1. 표준훈련비 현실화	노동부		제도 개선	실시	
2. 민간훈련 내실화를 위한 훈련체계 구축					
2-1. 실업자 직업훈련 자율성 부여	노동부		제도 개선	운영	
2-2. 기업내 현장훈련 활성화	노동부		제도 개선	운영	
2-3.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노동부		제도 개선	운영	
3. 민간훈련기관 규제완화 등 육성지원					
3-1. 민간훈련기관 시설·기계장비 기준완화 및 대부·지원제도 개선					
3-1-1. 지정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기준 완화	노동부	건교부 행자부	협의	제도 개선	운영
3-1-2. 직업훈련용 건설기계장비의 정기 검사 및 보험료 등 부담완화	노동부	건교부	협의	제도 개선	운영
3-1-3. 민간훈련기관 시설·장비 대부제도 개선	노동부	재경부	협의	제도 개선	운영
3-2. 훈련법인의 영리법인 또는 개인훈련시설로 전환 지원	노동부	재경부 법제처	협의	제도 개선	운영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 중소유통·프랜차이즈 산업을 중심으로 -

2005. 12. 9.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중소기업 현황	2
III.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6
IV. 향후 정책방향	10
V. 추진일정	15

I. 추진배경

□ 유통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중간단계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중추적 산업임

* 유통산업은 GDP의 8.6%, 고용의 16.9%를 차지('04년)

○ 이중 대부분이 중소유통으로서 소득순환·고용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소규모 창업의 중요한 수단

* '03년 기준, 유통산업 사업체수의 99.4%(65만개), 매출액의 65.7%(84조원)

○ 프랜차이즈산업은 소매업 외에도 외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

* 프랜차이즈산업 매출액은 약56조원, 고용 83만명, 가맹본부 2,211개('04년말)

□ 산자부는 중소유통 및 프랜차이즈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 위해 매3년마다 조사 실시

* 05.4.1~10.31 중소유통업 20,439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3,002개(본부 310개)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유통업 및 프랜차이즈 산업 분야의 향후 정책 과제를 도출

* 전반적인 유통산업 발전방향은 두차례(01.11월, 04.7월) 조정회의에서 논의

○ 또한, 대형·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

II. 중소기업 현황

‘02년 대비 시설·운영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소비심리 위축·
신업태의 성장 등으로 경영여건·수익구조는 악화

1. 시장규모 현황

□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65만개, 고용 130만명, 매출액*
84조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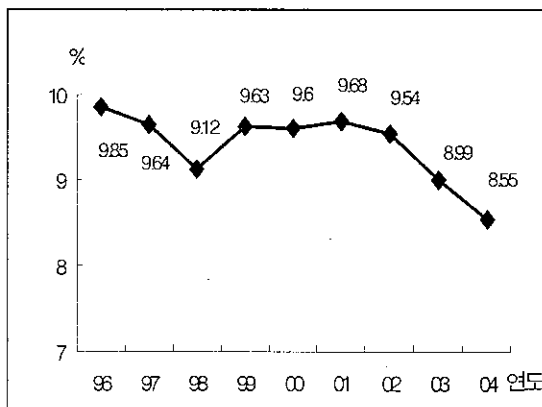
* 20인 미만의 소매업기준(‘03년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 중소기업 매출규모는 ‘98년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00년 이후 편의점·대형소매점 등과는 대조적으로 점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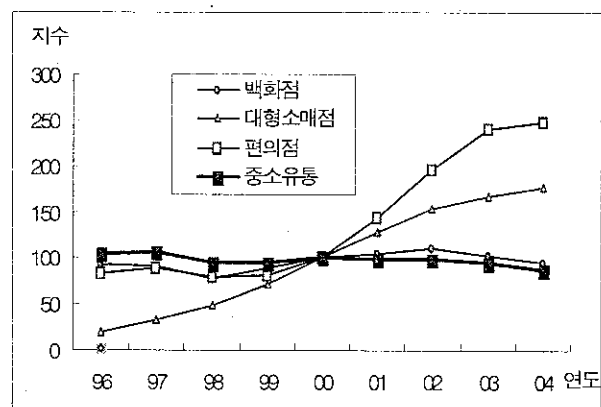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연평균성장률은 편의점 27.91%, 대형소매점 15.94%,
백화점 0.29%, 중소기업 $\Delta 7.98\%$

* 소매업체수의 감소 : ‘00년(693,701) → ‘02년(668,685) → ‘03년(653,752)

< 유통산업의 비중 >



< 업체별 매출액지수 >



* 유통산업의 비중 : 유통산업 매출액/GDP,

* 자료 : 통계청 KOSIS, 도소매업판매액지수(‘00년 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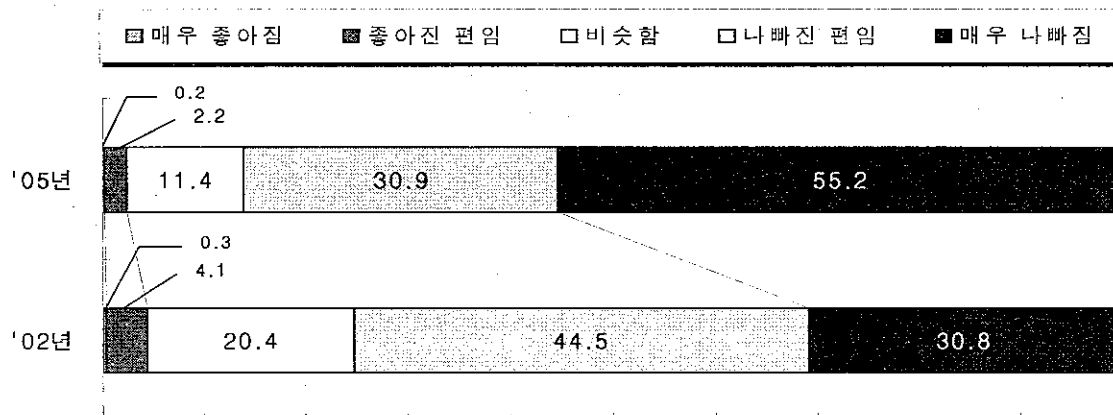
2. 경영여건 및 수익성 변화

- 월평균 매출액 500만원 이하 및 3,001만원 이상의 점포는 줄어든 반면, 500~3000만원의 점포비중은 높아짐

* 500만원 이하 '02(53.5%)→'05(44.8%), 501~3,000만원 '02(37.9%)→'05(47.6%), 3,001만원 이상 '02(8.8%)→'05(7.6%)

- 종업원 3명 이하인 업체가 대다수(95.2%)로 영세한 수준임

- '04년 평균소매마진율은 19.4%이며, 86.1%의 업체가 최근 1년간 영업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



- 특히, 주거지 근린상권(중소유통업체가 45%를 차지)과 월매출 500만원 이하의 영세업체(89%)의 영업상황 악화정도가 심화
-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은 경기불황(80.3%), 대형점의 출점(34.2%), 자금부족(27.4%)의 순으로 지적(복수응답)
- 또한, 대형유통점 출점으로 영향을 받은 업체는 52%로 '02년 대비(55.6%) 다소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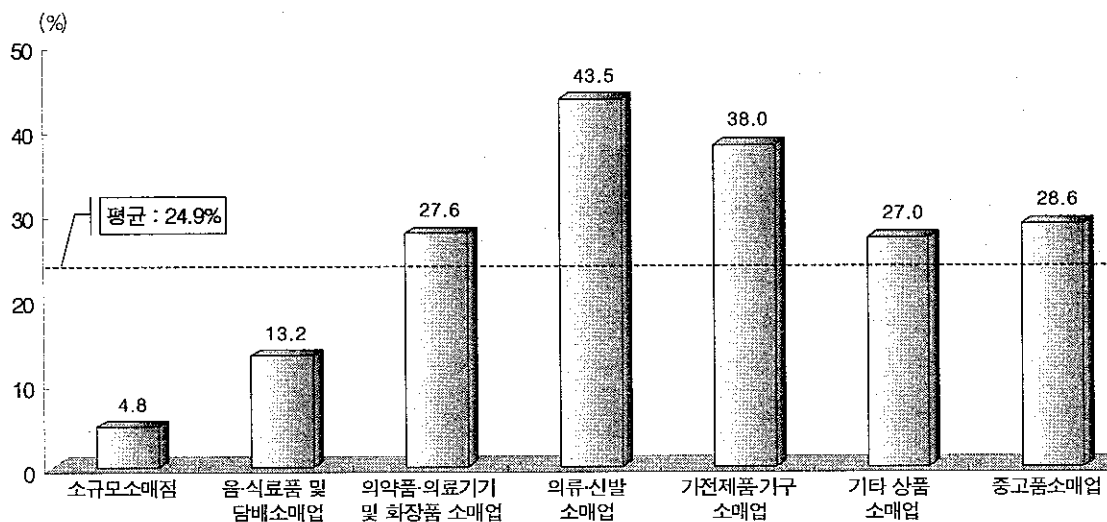
3. 시설 및 서비스제공 역량

□ 점포면적과 주차장보유비율 확대 등 소비자 편의시설은 개선

- * 점포면적 : 20㎡이하 는 감소(24.7% → 21.9%)
- * 주차장보유비율 : '02년(30.3%) → '05년(40.2%)

□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평균 24.9%이며, 40.5%는 전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소규모소매점*은 95.2%가 현금을 취급

* 음·식료품 위주의 각종 생활잡화 등을 소매하는 슈퍼마켓, 잡화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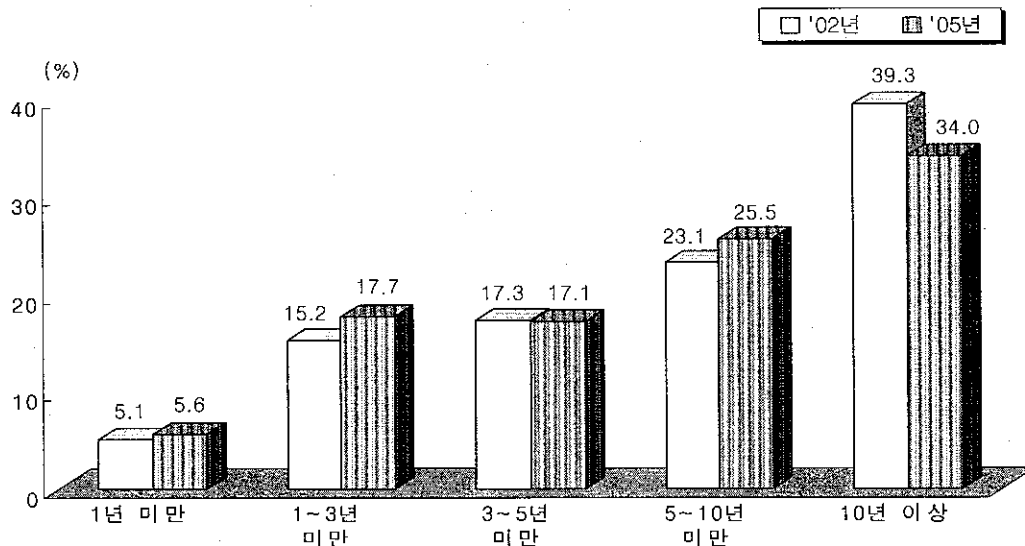


□ POS 도입비율은 14.1%로 '02년(10.6%)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정보화수준이 취약

- * POS(Point of sale) :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으로 판매정보, 매입, 고객유형 등 소매업 경영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를 판매시점에서 파악
- POS 보유 점포가 매출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월매출액 3,000만원 이상은 43.6%가 보유)

4. 영업기간, 교육 등 기타

- 영업기간은 '10년 이상'인 업체가 34%로 가장 많지만('02년 39.3%), 5년미만의 신생기업은 40.4%로 다소 증가



* 영업기간 '10년이상'인 업체중 월평균매출액 500만원이하가 40.3% 차지

- 73.6%는 최근 3년간 직무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교육받은 업체도 평균 2.1회의 교육만 이수

○ 특히, 매출액이 낮은 영세점포일수록 직업교육에 소홀

- 협회·단체 등에 가입한 조직화 수준은 평균 29.4%로 낮고, 업종별로는 '소규모소매점'이 가장 미흡(14.4%)

Ⅲ.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소자본창업 확대,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 등에 힘입어 매출은 대폭 성장하였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불안정한 수익구조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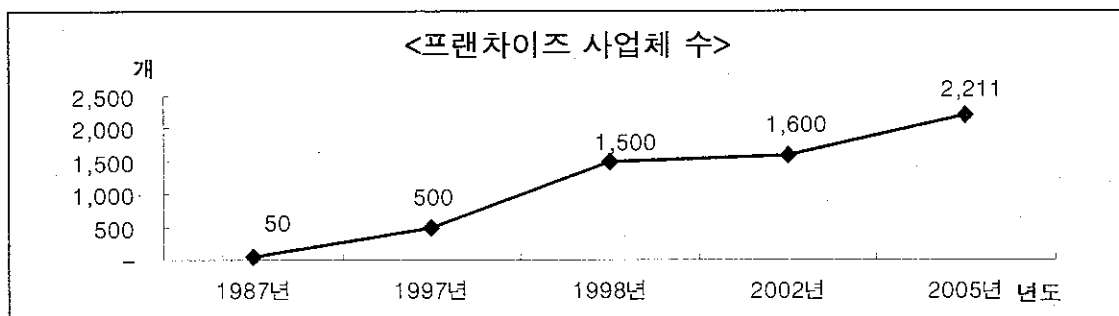
1. 시장규모 및 특성

□ '04년말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의 매출규모는 약 56조원으로 '01년말 대비 34.7% 증가, 종사자수는 83만명

* '01년말 매출액 41.69조원, 고용 566천명

* 미국은 GDP대비 14%를 차지, 일본은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장세 유지

○ '79년 프랜차이즈가 국내 도입된 이후, '05년 현재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 2,211개, 가맹점수는 약 28만개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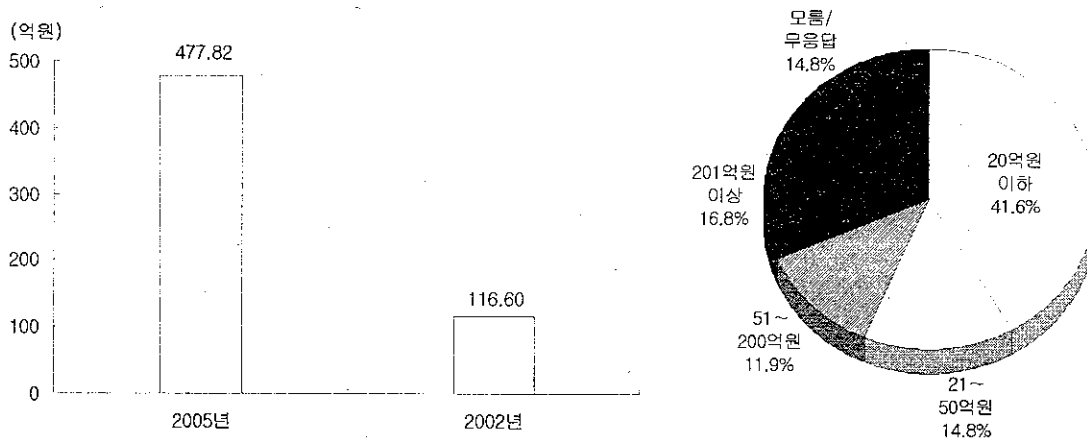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1,194개, 소매업이 515개, 서비스업이 502개로 외식업의 비중이 심화되는 추세

업종	'99년	'02년	'05년	02년 대비 증감율
외식업	654 (43.5%)	559 (34.9%)	1,194 (54.0%)	113.6%
소매업	311 (20.7%)	817 (51.0%)	515 (23.3%)	△37.0%
서비스업	536 (35.7%)	224 (14.0%)	502 (22.7%)	124.1%
계	1,501	1,600	2,211	38.2%

2. 매출액 및 신규투자비용

□ '04년 기준 프랜차이즈 본사의 총매출액은 평균 477.82억원으로 '02년(116.6억원) 대비 높은 신장세를 보임

○ 소수의 대형업체(16.8%)가 전체 매출액 신장을 견인



* 업종별 평균매출액 : 소매업 1,055억원, 외식업 248억원, 개인서비스업 62억원

□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보면 계약체결시 받는 가맹비는 평균 1,456만원으로 '02년(872만원) 대비 크게 증가

○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는 34.8%에 불과하여 불안정한 수익구조를 시현

* 이중 정액제는 62%, 정률제는 33.3%, 일시불은 10.2%

* 정액제는 월평균 30만원, 연평균 235만원, 정률제는 매출액 대비 12.5% 수준

○ 한편, 가맹점이 간판·매대설치비 등 초기투자비용은 평균 116백만원으로 '02년(111백만원) 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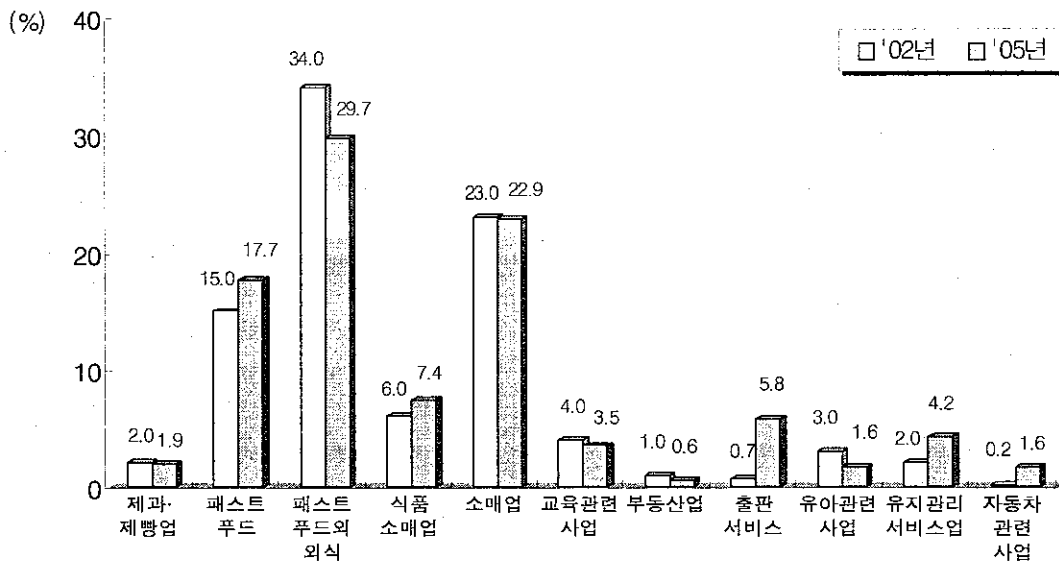
* 초기투자비용은 보증금(29.7%), 인테리어(27.6%), 물품비(21.3%), 가맹비(9%)로 구성

3. 영업환경 실태

-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기간은 5년 미만이 44.8%, '5~10년 미만'이 32.9%, '10년 이상'이 21.7%로 신생기업의 비중이 높음

* 가맹점은 '5년미만'이 69.7%수준으로 신생기업 비중이 높음(평균 사업기간 3.8년)

- 주력업종은 '외식업(49.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가맹점수는 패스트푸드사업(26%), 식품소매업(18.9%), 소매업(15.7%) 순

- 프랜차이즈 본부는 대부분 자기자본(74.5%)으로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10억 미만인 본부가 54.2%를 차지

- 프랜차이즈 본부의 종업원은 평균 90.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규직은 71명('02년 56.8명), 비정규직은 19.4명

- 가맹점의 종업원은 평균 3.2명이며, 이중 정규직원은 1.2명

- 가맹본부당 가맹점수는 평균 159.4개('02년 74.8개), 직영점은 평균 12개('02년 7.1개)로 체인망이 확장되는 추세

4. 해외진출 등 기타

□ 프랜차이즈산업의 해외진출은 증가 추세

- 해외진출업체는 '05. 11말 현재 53개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30개, 미국 26개, 일본 8개 등의 순임
- 조사대상인 310개 업체중 향후 1년내 진출계획이 있는 업체는 12.3%로 해외시장진출에 높은 관심

□ 가맹점에 대한 경영노하우 전수·컨설팅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평균 9.4명)으로 체계적인 프랜차이즈관리 미흡

- 교육회수도 적어(연평균 15.5회) 가맹점 관리·지도역량이 부족

□ 가맹점의 정보공개제도 활용은 미약한 수준임

- * 정보 제공받은 경험 있음 44.8%, 정보공개제도 모름 50%, 정보공개 신청 경험 있음 10%
- * 가맹사업법은 서면에 의해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신청 가능토록 규정

- 본부-가맹점간 분쟁사례는 영업지원 불만족(30.3%), 인테리어비용 부담(15.5%), 인근 신규가맹점 설치(12.9%) 순

□ 애로사항은 자금부족(35.8%), 가맹점통제의 어려움(32.6%), 적정한 인력확보(10.6%), 비법의 유출(6.5%) 순으로 나타남

- 유사업종 가맹본부간 공동구매·공동물류화 등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50.3%)
 - * 대부분 공급업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납품받고 있음(43.5%)
- 기타 우수브랜드 인증제 도입(79%), 일정요건을 갖춘자만이 가맹점을 모집하자는 견해(71.6%)도 피력

IV. 향후 정책방향

1. 기본방향

목 표

선진유통시스템 구축과 상생협력 기반 확충



전 략

- 중소유통업체의 유통환경변화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 프랜차이즈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글로벌화 촉진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현 재
한계점

중소유통업

- 규모가 영세하고 전매집습 경영
- 매장관리·상품구색 등 미흡
- 가격경쟁력 취약

프랜차이즈산업

- 신생기업이 많아 관리역량 부족
- 정보공개 등 건전한 거래환경 미정착
-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미비



정 책
수 단

- 선진 경영기법의 보급
- 물류공동화 등 시설 지원
- 상권중심지 활성화

- 건전 프랜차이즈 육성기반 조성
- 지역특산품에 프랜차이즈 접목
- 해외시장 정보제공·전시회 참가

2. 중점 추진과제

(1)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선진유통기법 보급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 이론중심에서 현장중심의 창의성 있는 교육연수 지원 및 성공사례(Best practice) 적극 발굴·전파

* 중소기업 교육연수, '05년 : 3억원, '06년(안) : 3억원

- 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에게 경영전략·회계 등 컨설팅 지원

* 쿠폰제 컨설팅 제도 활용(최고 100만원, 50~70%까지)

- 중소기업 전용 e-learning 구축

- 마케팅, 매장디스플레이, 유통정보, 재고관리 등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

□ 자영업 컨설팅사업 체제의 내실화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사업전환을 유도

-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한 특화된 컨설팅지원 활성화 및 단체형 컨설팅 지원방안 마련

- 교육과 자금을 연계한 「5단계*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자에게 지역신보 보증을 연계 지원

* ①컨설팅 → ②교육 → ③현장실습 → ④자금관리 → ⑤사후관리

□ 중소유통업·재래시장과 대형점포가 공동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여 도심상권 활력 회복

- * '80년대 이후 미국·일본 등의 주요도시는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공동화에 직면한 구시가지의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

□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 물류시설 건립 지원

○ 중소유통업·재래시장이 공동구매·배송·판매하는 공동 물류시설 건립을 확대하여 물류비 절감

-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사업 : '05년 78억원, '06년(안) 69억원
- * 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 등 공동사업 : '05년 76억원, '06년(안) 83억원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현황〉

'03	'04	'05	계
3(부산 동래, 제주, 전주)	3(대구, 광주, 거제)	3(부산 북구, 경기, 군산)	9
국비 31억원	국비 36억원	국비 78억원	145억원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절차 간소화

- 도매물류센터 건립시 국·공유지를 수익계약으로 매각 허용, 도로개설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 소상공인가금 지원절차를 종래 3단계(소상공인지원센터→지역신보→은행)에서 2단계(지역신보→은행)로 간소화

- *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중기청) : '05년 5,100억원, 금리 5.4%

(2)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성 제고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우수프랜차이즈 포상 확대 및 인증 부여방안 검토
 - *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검토

□ 우수프랜차이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KOTRA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정보제공, 해외전시회참가 등을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발굴
 - * 'The Face Shop'은 일본, 미국 등 11개국 62점포 운영('04년 매출액 615억원)
- 한류 등을 활용한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가이드북 제작·보급
 - * 한중일유통물류백서 및 중국진출가이드북 발간('05.12월)

□ 지역특산물에 프랜차이즈 마케팅기법을 접목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한 판로 확대 및 지역산업으로 육성

- *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업체와 지역특산물 생산업자 연결

□ 중소유통·프랜차이즈의 통계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지원시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결과 DB구축(www.gs1kr.org/ssmr)

(3)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기업·납품업체간 상생협력

□ 지역별 상생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대형·중소유통업체 및 지자체 관계자간 유통업상생 협의회를 구축하여 상호협력을 유도
- 대형유통업체의 전문지식을 중소기업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대형유통점 등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시 중소기업·협력업체의 동반진출 유도

□ 우수 상생협력기업 포상 등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납품업체의 상생발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유통대상 등 포상 추진
- 대형유통업과 중소기업·납품업체간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지역별 동반대회·체육행사 등 개최

□ 대·중소유통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유도

- 거래중단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

* 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05.4.1 시행)

- 대형유통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비율 확대 유도

V. 추진일정

세 부 과 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가. 선진유통기법의 보급 나. 자영업 컨설팅 체제의 내실화 다. 상권중심지 활성화 라. 공동물류시설 건립 지원 마.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06년 기추진 '06년 기추진 '06년	산자부 중기청 산자부·자자체 산자부·중기청 중기청
②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성 제고 나. 우수프랜차이즈 글로벌경쟁력 제고 다. 지역특산물에 프랜차이즈기법 도입 라. 중소기업·프랜차이즈 통계DB구축	'06하 '06년 '06상 '06상	공정위·산자부 산자부 산자부·중기청 산자부
③ 대형유통점과 중소기업납품업체간 상생협력 가. 지역별 상생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나. 포상 등 상생협력분위기 확산 다.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유도	'06년 '06년 기추진	산자부·자자체 산자부·자자체 공정위·산자부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2005. 12. 9

해 양 수 산 부

목 차

I. 세계경제 및 해상물동량 전망	1
II. 해운항만물류산업 대내외 여건변화	3
III.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전략	5
IV. 세부 추진계획	7
1. 일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7
2. 항만물류 인프라 정비 및 물류협력 강화	12
3. 고객지향적 항만물류서비스 시스템 정착	18
V. 향후 추진일정	21

I. 세계경제 및 해상물동량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4.3%의 성장세를 유지,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등 신흥아시아국가(NIAEs)도 4.7% 수준 성장을 유지
- 특히, BRICs중 중국은 금년 9%에서 8%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5% 이상 성장률 지속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세 계	3.0	4.0	5.1	4.3	4.3
미 국	1.9	2.7	4.2	3.5	3.3
유럽연합	0.8	1.3	2.5	1.6	2.1
일 본	-0.3	1.4	2.7	2.0	2.0
NIAEs	5.0	3.1	5.6	4.0	4.7
BRICs	5.0	6.2	7.2	6.2	5.8

* 자 료 : 국제통화기금(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9 / 2005. 9

** NIAEs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중국효과 등으로 금년은 약 7%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세계 교역량 증가율 전망>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국제통화기금(IMF)	3.4	5.4	10.3	7.0	7.4
세계은행(WB)	3.7	5.9	10.2	6.2	7.0

* 자 료 : 국제통화기금(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9 / 세계은행(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5. 11

□ 특히, 중국을 포함한 BRICs 및 NIAEs 국가들의 고성장으로 동북아 교역권이 세계물류 중심시장으로 급부상

○ 동북아는 지난해 세계 GDP의 17.3%를 차지,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으로 성장하고 시장비중도 지속 증가

* 동북아 물동량은 세계시장 대비 30.1%('03) → 31.5%('07)로 증대 전망

< 세계 3대 경제권의 세계 GDP 비중 전망 >

구 분	2004	2010
NAFTA	29.9 %	28.6 %
EU	33.0 %	31.4 %
동북아(한·중·일)	17.3 %	18.9 %

* 자료 :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second-quarter, 2004

□ 해상물동량도 지속 증가할 것이나, 증가율은 선진국의 소비 증가세 둔화, 중국의 물가안정 정책 등으로 둔화될 전망

○ 컨테이너 해상물동량은 중국효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 증가세 둔화로 증가율 하락

<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물동량(백만TEU)	78.9	90.9	100.9	112.5	122.3
증감율(%)	-	15.2	11.0	11.5	8.7

* 자료 : Drewry Shipping Consultant, Annual Container Market Review & Forecast, 2004. 9

○ 세계 벌크선 시장을 견인하였던 중국효과도 자국의 경기조정 정책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로 벌크물동량 증가세 둔화

○ 원유수송량 증가율도 산유국 공급여력 약화로 동반 감소 전망

* 지난 2~3년간 지속된 해운호황은 최근 물동량 증가율에 비해 과다한 선박량 시장 진입으로 내년이후 호황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전망

II.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대내외 여건변화

- 세계 해상교역의 중심축이 西進(대서양→태평양)함에 따라, 아시아 중심항만 패권은 ‘남’에서 ‘북’, 동북아는 ‘동’에서 ‘서’로 이동
 - 장기적으로 아시아 중심항만은 싱가포르 → 홍콩, 상해항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 추세
 - 동북아 중심항만도 중심기능이 도쿄, 고베(’70년대) → 부산항, 상해 및 선전항(’90년대 이후)으로 이동

< 아시아권 주요 항만의 위상 변화 >

중 국						한 국		일 본		대 만	
홍콩항		상해항		선전항		부산항		도쿄항		카오슝항	
4(’80)	1(’04)	59(’85)	3(’04)	10(’00)	4(’04)	3(’00)	5(’04)	12(’95)	19(’04)	3(’95)	6(’04)

* 항만별 화물처리실적 순위 (괄호안은 연도)

- 동북아지역 중심항만(Hub Port) 선점을 위한 한·중·일 등 주변국간 경쟁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
 - 중국은 상해 양산에 ’20년까지 30선석(’16년까지 16선석 완공)규모 컨테이너 신항을 개발, 양산항 중심의 환적체계 구축에 박차
 - 양산 신항은, 금년(12.10) 5개 선석을 개장, 환적비용의 50% 할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 활성화를 추진
 - * 그 외 2010년까지 화북지역 주요항만에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추진중 (대련항 10선석, 천진항 8선석, 청도항 8선석 추가개발 등)
 - 일본(3대 슈퍼중추항만) 대만(카오슝항) 등도 항만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에 위해 총력 매진중

□ 공급사슬관리(SCM) 체제의 보편화로 각국은 항만의 배후부지 개발 등을 통해 항만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가속화

- 유럽지역 중심항만인 로텔담항 배후지에는 지역의 다국적 물류·비즈니스센터 955개중 57%를 유치
- 중국 상해항 보세구에도 79개의 세계유수 다국적 기업이 참여 하여 5천개 이상 기업(총 65억불 이상 투자)이 상주

□ 노르웨이 등 주요 해운선진국은 톤세제 및 선박펀드제도 도입, 선박등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국 지배선대 확충에 주력

< 주요 해운국 지배선대 현황 (2004년 기준) >

구 분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독일	중국	한국
선복량(백만DWT)	156.4	109.5	50.8	48.3	45.6	20.7
선복량 순위	1	2	3	4	5	8
세계점유율 (%)	18.8	13.2	6.1	5.8	5.5	2.5

* 자료 : ISL Shipping Statistics Yearbook ('05. 3)

** 우리나라 선복량은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적외항선사 운항선박' 자료를 활용

□ 특히, 최근 해운업계는 시장지배력 선점을 겨냥한 선대확충을 위해 대형선사간 인수·합병(M&A) 등 업계빅뱅이 진행중

- 제1위 Maersk-Sealand社가 제3위인 P&O Nedlloyd社를 합병 ('05.5), 사상 최대 메가 캐리어(컨테이너 549척 보유) 탄생

* Maersk-Sealand의 구주항로 시장점유율: 14.2% →21%(독점구조 형성)

<최근 해운업계간 M&A 추진 현황>

인수선사		피합병 선사		M&A 결정시기
선사명	순 위	선사명	순위	
'덴' Maersk-Sealand	1	네델란드 P&O Nedlloyd	3	'05. 5
'獨' Hapak-Lloyd	11	캐나다 CP Ships	15	'05. 8
'佛' CMA CGM	5	프랑스 Delmas	-	'05. 9

Ⅲ.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전략

□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여건

강 점 (Strengths)	약 점 (Weaknesses)
◆ 선진 해운제도 도입 ▪ 톤세제, 선박펀드 및 선박등록제도 등 선진 해운국 경쟁여건 조성 ◆ 중심항만으로서 입지적 우위 ▪ 구미-아시아-북미를 연결하는 세계 주요간선 항로상에 위치 ◆ 해운·조선·철강산업 균형발전 ▪ 해운(세계8위), 조선(세계1위), 철강(세계6위) 산업 보유	◇ 낮은 국적선대의 증강속도 ▪ 주요 해운국 선대증가율(2.2%)에 비해 국적선 증가율(1.6%)은 낮은 수준 ◇ 중심항만으로서 인프라 부족 ▪ 항만시설, 항만배후부지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 미흡 ◇ 항만관리체제의 비효율적 운영 ▪ 항만관리가 정부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미흡
기회요인 (Opportunities)	위협요인 (Threats)
◆ 동북아 역내 배후시장 급성장 ▪ 구매력 기준으로 한·중·일의 경제 규모(10.1조\$)는 미국(10조\$)과 대등, 거대한 소비시장 형성 ◆ 범 정부차원의 지원과 의지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국정 지표로 선정, 각종지원책 추진 ◆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우수한 IT 능력 세계적 수준의 해운기업 보유	◇ 주변 항만과의 경쟁 심화 ▪ 중심항만 선점 경쟁에서 뒤질 경우 지역 피더항만으로 전략 우려 ◇ 항만노무공급 체계의 비효율성 ▪ 독점적 항만노무공급체제로 인한 국가전체 과다 물류비용 발생 ◇ 항만물류산업의 집적화 제도 미비 ▪ 개별서비스 위주의 항만물류산업 육성은 항만의 고부가가치화에 한계

□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장기 비전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

- 로지스틱스 허브 코리아(Logistics Hub Korea) -



< 추진 전략 >

① 일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선복증강을 위한 세제 및 선박금융 지원 강화
- 동북아 피더네트워크 확충
- 경쟁력 있는 선원인력 공급 지원

② 항만물류 인프라 정비 및 물류협력 강화

- 중심항만을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 물류협력을 통한 신규 화물 및 물류기업 국내유치
- 항만물류산업의 집적(Cluster)화 추진

③ 고객지향적 항만물류서비스 시스템 정착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항만관리체제 개편
- 항만물류정보시스템 선진화



“ 新 국가동력산업인 해운항만물류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 약점 및 경쟁력 위협요인에 대한 조기 처방책 마련, 개선
- 강점 및 기회요인 활용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개발 및 실천

IV. 세무 추진계획

1

일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 선박증강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① 선박 톤세제 본격 시행

- 해운선진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4.12)으로 금년부터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 시행

* 선박 톤세제 : 해운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운항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조세제도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11개국이 해외치적으로 감소된 자국선대 회복을 위해 도입

- 개별 해운기업은 톤세제 적용 대상기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사선 (BBC/HP 포함) 등 보유선대 확대를 추진

* 대상기업 요건 : 자사선 운항순톤수가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운항 순톤수의 20% 이상

- 톤세제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04년 이후 국적선 규모가 총 2,390천G/T(121척) 증가하여 연간 평균 10.3% 의 선대증강 실현

<국적 외항선대 증가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1
국적선 수(척)	425	429	422	420	491	542
총톤수(천G/T)	11,857	12,184	11,788	11,174	12,611	13,564
선박 증가율(%)	-	2.8	△3.3	△5.2	12.9	7.6

- 금년말까지 조특법에 따른 톤세제 적용을 위한 세부절차 (구체적인 기준선박 요건, 정부 확인절차 등) 규정(고시)을 마련, 시행

②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02.5)후 '04년부터 34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적 해운기업의 선박확보를 지원

* 선박투자회사제도 : 일반국민,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주고, 그 대선료에서 차입금과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

○ 총 21.6억불의 선박펀드를 조성, 34척(신조 25척, 중고선 도입 9척), 261만G/T 규모의 선박을 추가 확보

* 독일은 소유선박의 75%를 K/G 펀드 ('90년대 10년간 약 1,200여척, 86.5억불을 조성)가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컨테이너 용선시장의 60~80%를 점유

□ 시중 부동산자금을 선박펀드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 개발 및 세제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 개발('06년)

○ 선박펀드 만료시 선가차액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수익보전형 선박펀드 상품 개발

○ 선박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등 현행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유지

* 선박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3억원 이하 비과세, 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2008년까지)

□ 선박금융 연구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운기업과 금융권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선박금융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위탁교육(인턴쉽제도 등) 활용

○ 국내외 금융권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국제 금융컨퍼런스 연례 참가

나. 동북아 피더 네트워크(Feeder-Network) 확충

① 근해지역 피더서비스망 확충

□ 모선과 피더선간 저비용·고효율 환적체계 구축을 위해 모선 기항 위주의 현행 터미널시설 운영시스템을 개선

○ 환적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모선과 피더선간 터미널 공동이용, 필요시 피더선을 위한 전용부두 개발 추진

□ 동북아시아 역내 항로의(원양·근해운송별, 국가별) 피더망 구조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강화방안 도출('06 상반기)

○ 항로별 물동량 분석 등을 통해 피더망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동북아물류 피더네트워크 강화방안" 연구용역 중(2005. 5~12, KMI)

<한/중 및 한/일 항로 피더서비스 현황('04년 말 기준)>

구 분	한·중 항로	한·일 항로
국내 기점항만	부산, 광양, 인천 등 8개	부산, 광양, 인천 등 5개
외국 기점항만	중국내 21개 항만	일본내 56개 항만
투입 선박척수	43개사 79척(국적선 14사 32척)	18개사 60척(국적 13개사 51척)

* 자료: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한국근해수송협의회

□ 중국, 일본 및 유럽 등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동북아 주요 항만간 경쟁 및 협력방안 모색

○ 환적화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한·중 항로 활성화 추진

○ 중국의 화북지역 주요 항만들과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항만을 이용한 선사에 대해 동시에 혜택을 제공 등

②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해송 전환(Modal Shift) 추진

□ 연안해운(916개사, 2,056척)은 유류, 철강재, 모래, 시멘트 등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기초물자를 수송하는 기간물류 기능을 수행

○ 수출입 화물 등 국내 운송화물의 19.2%를 연안해운이 담당

< 운송수단별 수송 분담율 (2003년 기준) >

구 분	개	해 운	도 로	철 도	항 공
운송실적(천톤)	756,316	145,327	565,456	47,110	423
수송분담율(%)	100	19.2	74.6	6.2	0.1

□ 선사에 대한 지원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화주 중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연안해송 활성화 모색

○ 외국의 연안해송 활성화 사례 및 우리나라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05. 6~11)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

* 영국은 육상운송 화물을 해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중인 FFG(Freight Facilities Grant) 제도 도입

* FFG : 육상화물의 해송전환시 화주에게 물류관련 시설 자금 지원

□ 생산적인 남북 해운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한반도 해송물류 네트워크 구축 준비를 착실히 추진

○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이 공식 발효('05.8) 함에 따라 지원물자이외 상업적 물자는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

*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실무회의('05.9, 개성)시 해운항만 관계자 상호방문, 선박의 장거리 직접통신 보장, 항만하역시설 지원 등에 합의

○ 향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를 통한 해사협력 적극 추진

다. 경쟁력 있는 선원인력 공급 지원

□ 국제선박 경쟁력 제고의 주된 장애요인인 선원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선원 고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국적선의 경우 외국선원 고용이 자유로운 편의치적국 선박에 비해 척당 연간 약 24만불의 선원비를 추가 부담
- 장기적으로 외국선원 고용범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현행 7명에서 모든 선원으로 확대(선·기관장 및 주요 해기사는 제외)

<외항상선의 외국선원 고용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9
합 계(A)	7,825	8,452	8,317	8,925	9,310
한국선원 고용	6,614	6,832	6,495	6,932	7,132
외국선원 고용(B)	1,211	1,620	1,822	1,993	2,178
외국선원 비중(B/A, %)	15.5	19.2	21.9	22.3	23.4

□ 외국인선원 고용 확대에 따른 국적선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반 지원정책 동반 추진

- 전시사태 등을 대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외국선원 고용규모를 제한(현행 6명), 일정 수준의 국적선원 유지

* 국가필수국제선박 : 국가안보에 필요한 주요물자를 수송하는 국제선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선박 ('08년까지 30척 지정 예정, 11억원)

- 한국선원 고용 안정을 위해 선원능력개발 지원, 우수한 국적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 등 추진

- 해사고등학교(부산/인천, 연간 500명) 교육과정을 현장중심(2년 이론 + 1년 실습)으로 개편, 해양수산연수원 교육과정도 정비

2

항만물류 인프라 정비 및 물류협력 강화

가. 중심항만을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① 부산신항 및 광양항의 차질없는 개발

□ 부산항(신항, 북항)과 광양항에 연간 2,336만TEU 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11년까지 총 63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개발

- '08년까지 부산신항 18선석('06. 1월 3선석 조기 개장), 광양항은 19선석(현재 12선석 완료·운영, 7선석 추가 조기확보) 조기 완공

<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발계획 >

구 분		부산신항 ('95~2011)	광양항 ('87~2011)
개발 규모		총 30선석	총 33선석(12선석 운영중)
하역 능력		804만 TEU	933만 TEU
투자 금액	계	9조 1,542억원	6조 6,323억원
	재정	4조 1,739억원(45.6%)	2조 6,809억원(39.3%)
	민자	4조 9,803억원(54.4%)	3조 9,514억원(60.7%)

□ 항만 배후부지를 종합물류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신항은 134만평을 '13년까지, 광양항은 122만평 '11년까지 조성

- 부산신항은 배후부지 25천평을 '05년 말까지, 광양항의 경우 '06년까지 동측 20만평(10만평 완료)을 조기 공급

□ 항만시설 확충에 따른 배후수송시설을 '11까지 적기에 완비

- 부산신항 배후도로(가락~초정 IC간 등 40km), 철도(38.3km) 건설
- 광양항의 경우 배후도로(30.15km), 철도(익산~순천간 154.2km 등), 광역망 고속도로(전주~광양간 118km 등) 등 건설

② 부산신항 조기 개장

□ 중국 양산항 개장에 대응하여 내년 1월 개장을 차질없이 추진

- 부두 3선석 98%, 배후부지 2.5만평 95% 공정율, 안벽 및 야드 크레인 27기 전체 설치를 완료(11월말 기준)
- 항만운영요원 확보, 터미널 정보시스템(Port-MIS) 구축 등은 기 완료

* 12. 16일 부산신항 시범운영을 거쳐 1월에 상업운영 돌입 예정

□ 신항 개장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월 중순 개최예정

- 국내외 주요 선사·운영사를 초청, 동북아 관문항의 이미지 극대화를 통한 마케팅 기회로 활용
- 사전행사(열린음악회, 단축마라톤 등)를 통해 국민적 축제 분위기 조성

□ 개장 1년차 물동량을 최소 45만TEU(하역능력의 50%) 이상 확보

- 북항↔신항간 시내 유료도로 '컨'통행료 면제 연장('06→'08) 및 해상바지 셔틀서비스 운영('07)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최첨단 장비 및 서비스 제공으로 항만생산성을 극대화
 - 선박당 크레인 집중투입(5~7기) 및 Twin lift 크레인 도입 등을 통하여 선박체류시간을 단축(17시간→12~14시간)

□ 부산신항 개장에 따라, 노후화된 북항 일반부두는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

- 신항 피더부두 완공시점('07년), 부산항 물류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8년 이후 일반부두를 단계적으로 재개발

나. 물류협력을 통한 신규 화물 및 물류기업 국내유치

① 전략적 환적화물(T/S) 유치

- **국내항만**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은 '94년이후 10년간 304% 증가 이후 최근 둔화세로 반전된 반면, 중국은 962%의 초고속 성장세

구 분	한 국		중 국	
기간	1994년	2003년	1994년	2003년
물동량(만TEU)	321	1,299	387	4,117
10년간 증가율(%)	304		962	

- 특히, 모선의 중국 직기항 증가 등으로 환적 “컨”화물의 증가율이 '03년 이후 급격히 둔화('04년 : 5,158천TEU 처리)

* 환적화물 증가율 : 35.2%('02) → 9.3%('03년)→ 12.4%('04년)→8.2%('05년 추정)

- **추가 환적화물 유치가 가능한 항로를 중심으로** 화물의 기종점, 글로벌 선사들의 항만 이용실태 분석을 기초로 **포트 세일 전개**

- 중국(화북지역)-부산/광양-미주 항로에 대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모선의 자부두 T/S가 확대되도록 피더선 지원 강화

* 피더선박의 하역료 인하 등 적극적 유인책을 발굴하여 추진

- 선사의 **환적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

- 컨테이너세(2만원/TEU)를 폐지하고, 기항횟수 증가 선사에 대해 선박 입·출항료 감면 등 추진

- 일정물량 이상 환적화물을 유치한 경우, 전대료 및 하역료의 일정금액 또는 그 비율을 감면(Volume Incentive 제도)

- 물량창출 지원금을 지원하는 「마일리지 카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② 배후부지에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 단순 ‘화물처리형’에서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육성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가 필수적

○ 그간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제도 정비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유치활동으로 배후부지에 11개(외국 5社) 물류기업 유치

* 부산신항(123만평)과 광양항(161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04.12)

* 해양부 등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등 추진

- 부산 감천항 입주 3개 기업은 운영 개시('05.11), 부산 신항은 1개
기업 선정('05.11), 광양항 2개사는 창고 건립 추진중

	배후부지	유치기업	투자액
부산항	감천물류단지(국유지 2만평)	미쓰이물산+국보+한국미쓰이물산	220억 원
	감천물류단지(시유지 2만평)	세방+헨리베스&, 동부건설+스타인백	190억 원
	신항 (국유지 9.4만평)	대우로지스틱스+ DAT, JAPAN +후쿠오카운수	110억 원
광양항	중마매립지(시부지 5만평)	스타인백, (주)그로우텔	940억 원

□ 부산·광양항 등 항만 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 '06~'07년 상반기까지 광양항에 물류센터(1층 1만5천평) 건립

□ 내년 조성될 배후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절차를 통해
향후 물류기업 유치활동 지속 추진

○ 부산신항(20만평), 광양항(12만평) 입주자 선정 공고('05.말~'06.초)

○ 투자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아이리스오야마, 이토추社 등), 중국(상해
설명회, 05.12월말 예정)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 전개

③ 한·중·일 물류협력 강화

□ 동북아 3국의 수출입 컨테이너물량(전세계 34%) 증대로 향후 3국간 공동이익을 실현할 역내 물류협력시스템 구축 시급

- 3국이 물류분야 협력을 추진할 경우 각 국의 물류효율 제고 및 우리 항만의 실질적 성장기반도 확대 가능

□ 실질적인 3국간 물류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해 한·중·일 해상물류 장관급회의 구성·개최 추진

-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05.7.13. 동경), 중국 교통부장('05.10.27)과 회담을 통해 동 협의체 구성에 합의('06 하반기 첫 회의 개최)

*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05.11.16)에서 동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확인

- 항만 등 물류인프라 공동활용, 물류 IT인프라 구축, 공동 물류센터 설립, 물류 표준화, 인력교류 등을 협의

- 향후 동 협의체에 러시아 및 ASEAN을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물류협력 외교의 장으로 육성

□ 동북아 3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정착화

- 중국의 발해만, 산둥반도, 양쯔강 유역 기업들의 우리 항만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5. 1~12)

- 우리 항만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對일·對중국 물류협력 모델을 수립하여 기업 및 화물유치 기반을 마련('05. 12)

다. 항만물류산업의 집적(Cluster)화 추진

- 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집중적 육성이 필요

* 항만물류산업 :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수리조선, 컨테이너수리업, 창고업 등 항만물류를 지원하는 산업

- 현재 우리 항만물류산업은 선진항만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액이 낮은 수준

* 부산항의 부가가치(34억불)은 로테담(245억불), 싱가포르(164억불)의 20% 내외

- 개별서비스 육성에서 벗어나 항만물류산업의 집적(Cluster)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지자체 포함)가 부지제공, 도로개설 등 제반인프라 기반을 구축

-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화 지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관세면제 조치 등 효과 극대화

- 부산항을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 우위 업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

- 부산 신항에 유류중계기지 및 전용터미널 등을 설치, 부산항을 선박유류공급 중심기지로 육성

- 부산항에 국제선용품유통센터(15천평) 건립을 추진하여 부산항을 동북아 선용품공급 중심기지항으로 개발

* 선용품유통센터 후보지로 부산남항, 신선대 배후지, 부산신항 배후지를 검토중

- 현재 추진중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항만하역, 수리조선 등을 포함하는 항만물류산업 종합육성방안 마련('06년 상반기)

* 「항만물류산업의 클러스터화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중 ('05.5~'06.3, KMI)

3

고객지향적 항만물류서비스 시스템 정착

가.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 일용직 노무공급체제를 기업의 직접 고용체제로 전환

-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항운노조원을 회사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는 형태로 체제 전환

* 현재의 항운노조원에게는 완전고용, 정년보장 및 현재의 임금 보장

- 노·사·정간 합의를 통하여 부산·인천 우선 실시하고, 기타 항만은 별도의 노사정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 부산·인천 개편시 인력 및 선박재항시간 감소로 연간 1,000억원 절감

□ 항만노무상용체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05.12.1, 국회의결)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요 >

- ◇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노조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국고 지원
- ◇ 일시에 많은 노조원이 퇴직할 때 부족한 퇴직금을 정부 융자
- ◇ 상용화된 노조원의 근로조건(정년, 임금 등)을 명문으로 보장
- ◇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항만시설 임대계약 해지 등 벌칙 규정

- 항운노조측과 세부협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06.3)

□ 기타 항만에는 노·사·정 공동 「개혁추진기구」 도입 추진

- 상용화 실익이 미미한 항만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비리 차단
- 여건이 성숙되는 항만은 별도의 노사정 협의로 상용화 추진

나. 항만효율성 제고를 위한 항만관리체제 개편

□ 항만서비스 제고를 위해 '90년대 이후 정부 관리체제로부터 항만공사제(PA) 도입, 민간기업 운영방식으로 전환 등을 추진

- 부산항만공사('04.1) 및 인천항만공사('05.7) 설립 등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항만공사의 설립요구 증대
- 이러한 증폭된 항만관리 참여요구와 국제물류 여건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만운영체제 개편 필요

*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지방청 기능의 지자체 이관방안을 추진중

□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단계적, 차별적인 항만관리체제 개편 추진

-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항만(울산항, 여수·광양항 등)부터 항만공사로 전환
- 국가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정 건전성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항만은 지자체와 협의후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이관 추진
 - 주요 거점항만(마산항 등)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입 및 항만 개발계획 완료시점 등을 고려, 이관시기 결정
 - 소규모항만(삼천포항 등)은 해수부 지방조직 개편시기('06~'07)에 지자체로 이관 추진

* 연안항 및 어항 관리체제와 같이 항만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항만 개발 및 유지보수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

다. 항만물류정보시스템 선진화

□ 선박 입·출항 관련 민원서비스를 기존 Port-MIS에 의한 EDI 방식에서 웹스탑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기반체제로 전환('06.2)

○ 항만관련 고유서식(15종)을 SP-IDC와 KL-Net을 통해 무상 서비스하고, 기관간 공동서식(4종)은 싱글윈도우에서 서비스(유료)

□ 수출입관련 기관·업체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 수출입관련 기관 보유 정보의 공유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및 다양한 부가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물류주체(선사, 터미널, 검수사, 위험물검사원 등)간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정부기관 및 물류주체간 정보공유 및 통합서비스 제공

□ 유비쿼터스 항만(U-Port)을 위한 RFID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 컨테이너터미널 자동화 및 수송 화물 및 운송차량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구 분	1단계: 2006 (U-Port 인프라 구축)	2단계 : 2007-2008	
		2-1단계 : 2007 (U-Port 상용화)	2-2단계 : 2008 (U-Port 고도화)
목표	-U-Port 구현을 위한 RFID/USN 인프라 구축	-U-Port 실현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통합화	-U-Port 시스템의 통합화 고도화
추진 과제	-터미널 게이트자동화(차량) -컨테이너 추적 자동화 -야드 관리 자동화(RTIS/GPS)	-글로벌 정보망 연계 -유관기관 물류정보망 연계 -관련 물류망 연계	-글로벌 정보망 고도화 -유관기관 물류정보망과 단절없는 정보유통 고도화
적용 시설	-부산지역 전항만(전용부두, 일반부두)	-부산지역 전항만 -인천, 광양 등 기타 나머지 항만 1단계사업 추진	-부산지역 전항만 -인천, 광양 등 기타 나머지 항만 2-1단계사업 추진

Ⅳ.향후 추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기관 (협조기관)	추진일정
1. 일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선복증강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선박톤세제 적용을 위한 고시 제정	해양부 (재경부)	'05. 12
	선박펀드 조성을 위한 금융기법 개발	해양부 (재경부)	'06
○ 동북아 피더 네트워크 확충	동북아 피더서비스 제고방안 마련	해양부	'06 상반기
	연안해송 활성화 방안 마련	해양부	'06 상반기
○ 경쟁력 있는 선원인력 공급 지원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확대	해양부	계 속
	선원교육기관 교육과정 개편	해양부 (교육부)	'06년 상반기
2. 항만물류 인프라 정비 및 물류협력 강화			
○ 중심항만을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발	해양부 (기예처, 건교부)	'87~'11
	부산신항 개장(북항 재개발 포함)	해양부 (재경부, 기예처, 건교부, 부산시)	'06. 1
○ 물류협력을 통한 신규 화물 및 물류기업 유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해양부 (부산시)	'06 상반기
	물류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립	해양부	'07~'10
	한·중·일 해상물류 장관급회의	해양부 (산자부, 건교부)	'06 하반기
○ 항만물류산업 집적(Cluster)화	항만물류산업 종합육성방안 마련	해양부 (산자부)	06년 상반기
3. 고객지향적 항만물류서비스 시스템 정착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항만노무상용화 지원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해양부 (기예처)	'06. 3
○ 항만관리체제 개편	항만공사(PA) 설립	해양부 (기예처, 행자부, 지자체)	계 속
	항만관리권 지자체 이관		
○ 항만물류정보시스템 선진화	선박입출항 서비스 인터넷기반 제공	해양부	'06. 2
	U-Port를 위한 RFID 시스템 도입	해양부 (정통부)	'06~'08